

무배당 알리안츠건강인우대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자격】
- 제 3조 【특약의 감액】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4조 【보험요율의 적용】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5조 【해지환급금】
- 제 6조 【배당금의 지급】

제4관 특약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제 7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제 8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 9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 제10조 【흡연상태 변경의 효과】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1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알리안츠건강인우대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2인(3인, 多人)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청약한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우량체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자격】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보험 가입자격자로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吸煙)”이라 합니다)하지 아니하고 건강상태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하 “우량체기준”이라 합니다)에 적합한 자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감액】

- ①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일부 해지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감액으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회사에서 정한 주계약의 최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며 감액된 이후 납입해당분부터 할인전 주계약의 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4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우량체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5조 【해지환급금】

제3조 【특약의 감액】 제1항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주계약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용어해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특약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특약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7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비흡연고지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해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7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약의 적용 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표준체보험료"라 합니다)보다 적은 이 특약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이하 "우량체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과 관계없이 "우량체보험료"의 "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9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흡연상태 변경의 효과】

- ① 회사는 제9조 【흡연상태 변경통지】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우량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약은 장래에 향하여 해지 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1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우량체보험료”의 “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흡연상태 변경통지】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자격】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